

| 인권 자료실 | | |
|------------|------|-----|
| 류기호 | 사료번호 | |
| 98 5/21 | A3-5 | 229 |

외국인선원연수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故 정관욱씨 사망사건을 통해 본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국동포 선원 故 정관욱(중국동포, 23세)씨는 동북선박주식회사를 통해 입국을 하여 선원 연수생으로 창덕해운의 해성호에 승선하여 일하던 중 97년 9월 18일 작업도중 바다에 추락하여 실종이 되었고, 실종이후 1주일이 지나서 사체로 발견이 되어 현재까지 3개월이 넘도록 시신은 인천 은혜병원 영안실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 사측에서는 '연수생은 계약서에 1500만원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해오다가 현재는 위로금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외국인 선원연수생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실에 조정재 장관과의 면담을 4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비서실 직원들의 권위주의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로 지금까지 우롱만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은 지금까지 외국인노동자 및 중국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 근래에는 24만여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계속 상담을 해 오면서 제도의 개선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의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공청회 및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본 집의 노력과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94년도에 <불법체류자 산업재해 보상 실시를 위한 항의 농성>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업재해 보상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어 1995년 1월 9일부터 네팔인 연수생 13인과 <산업기술 연수생제도 개선을 위한 농성>을 통해서 이전에는 합법체류자인 연수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재해를 당해도 상해보험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1995년 3월 1일부터는 연수생에게도 산업재해보상 실시, 의료보험의 적용, 최저임금제 실시 등을 적용하게 하는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리나 아직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치해있는 외국인 선원연수생 문제는 매번 승선해 있는 특수성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했고, 관심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육상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수생들의 문제는 일정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외국인 선원연수생은 이전의 비인간적인 규정에 묶여 있어 이로 인한 각종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있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14조에 의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근래에는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나 연수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와 연수생 사용자단체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순노동과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왔다. 그 결과 연수생의 대량이탈과 각종 인권침해사례 비인간적 대우로 인하여 국제적 망신과 국내의 양심있는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왔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과 국내의 항의에 직면한 정부는 결국 "연수취업제"란 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술 연수생 문제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연수생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의해 아직까지 아무런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연수생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고 연장하려 한다면 제2, 제3의 페스카마호 사건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외국인 선원연수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7년 12월 21일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진보사회를 위한 서울대학교 모임

참여연대 청년마을